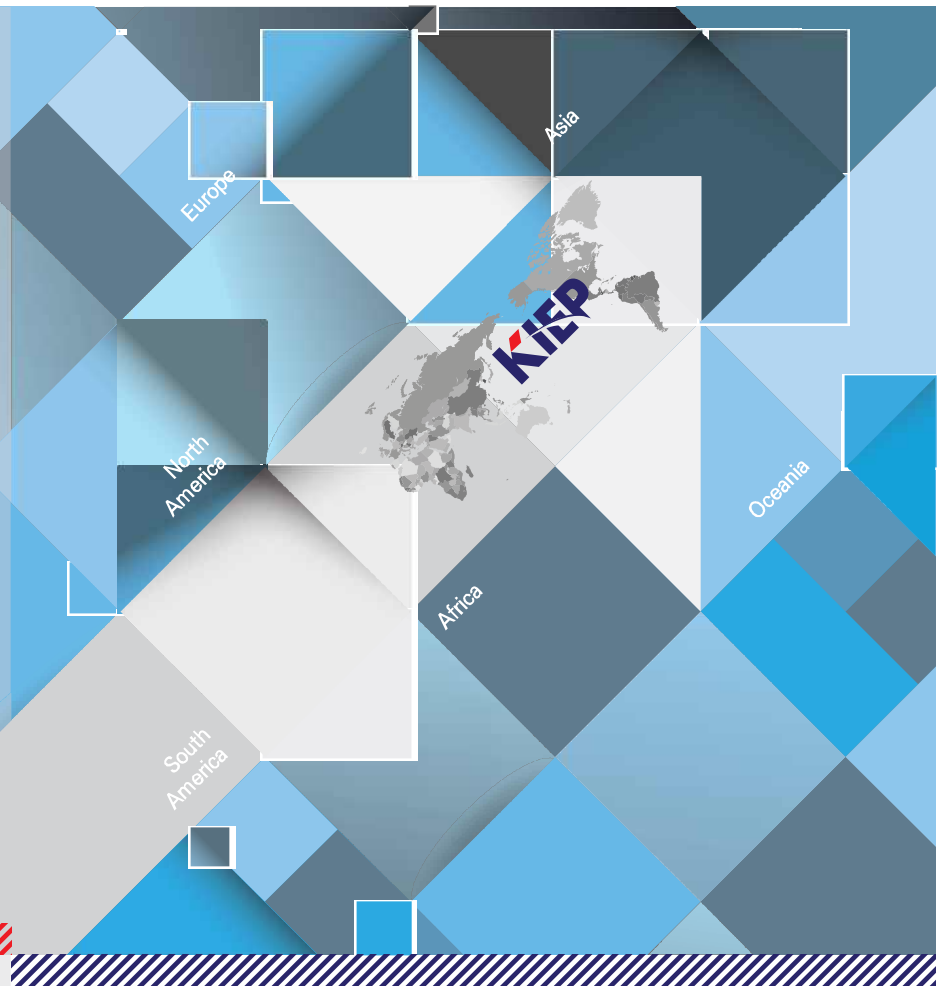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09

2018년 5월 30일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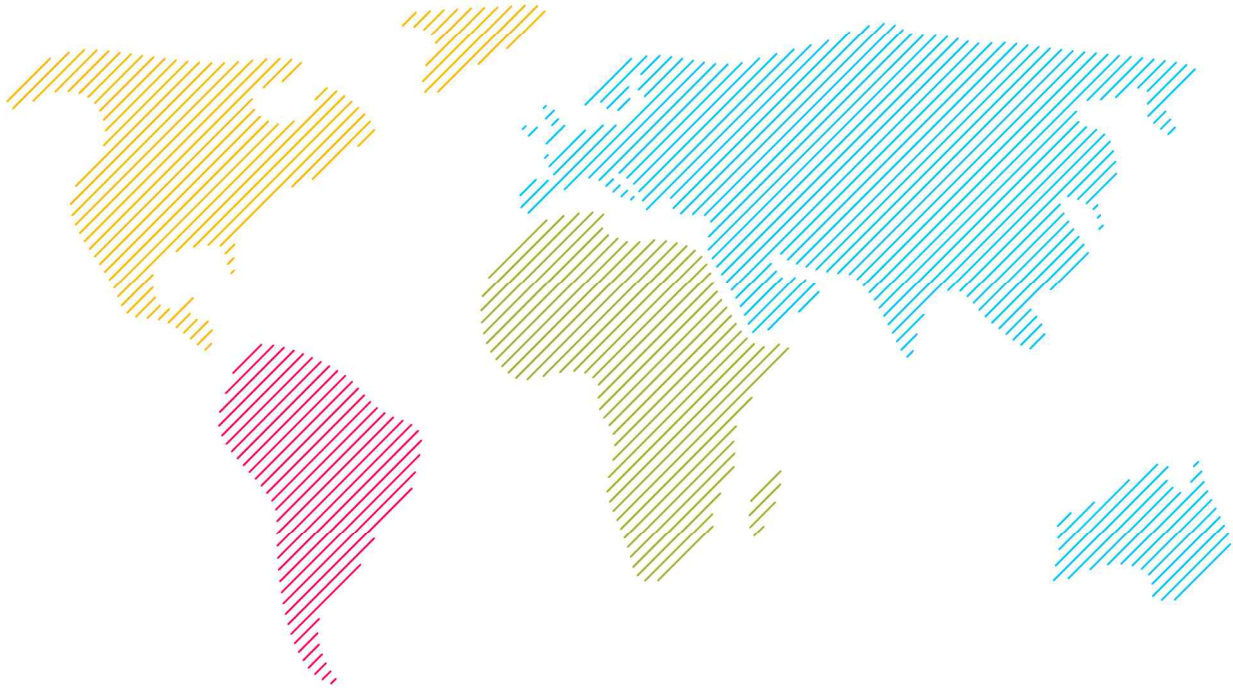
곽성일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sikwak@kiep.go.kr)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ebpark@kiep.go.kr)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요약

- ▶ APEC은 디지털 경제를 통해 역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핵심주제를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으로 설정함.
 - 디지털 경제는 생산성 향상, 혁신을 통한 구조개혁 촉진,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강화,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해 APEC 무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디지털 경제는 APEC Post-2020 비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여 APEC의 주요 목적인 시장접근성을 개선할 전망이다.
- ▶ 개발도상 회원국 중 일부는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노동력 대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등의 위협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디지털 인프라의 차이에서 비롯한 국별 개발격차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정보격차가 소득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디지털 혁명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네트워크 보안사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이에서 균형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
- ▶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관련 어젠다 제안이나 사업 참여가 거의 없어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발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높은 수준의 물리적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의 디지털 경제 이슈에만 집중되어 있어, APEC 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제안사업이 거의 없음.
 -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 ▶ APEC은 Post-2020 비전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도상 회원국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 뒤처진 국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을 고려해야 함.
 - OECD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2013년에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 관련 다수사업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APEC은 OECD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업 측면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해야 함.
 - APEC은 FTAAP 역량강화사업(CBNI)과 동일한 형태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지역에 디지털 역량강화 센터 설립 혹은 워크숍 개최를 통해 격차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함.



차 례

1. 연구 배경

2.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내용

가.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과제

나. APEC 내 디지털 경제의 등장

3.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체계 및 현황

가.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체계

나. APEC 내 최근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인터넷가치사슬 도표화

1. 연구 배경

■ 디지털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전자상거래도 온라인 사용자와 사용시간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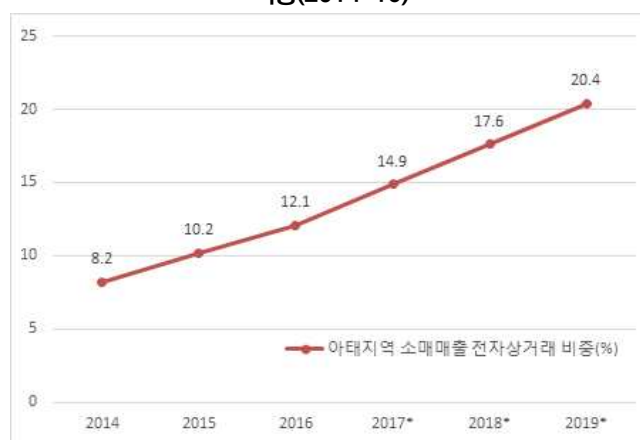
- 글로벌 총 소매매출액은 2017년 2.3조 달러(10.2%)에 달하며, 2021년에는 4.9조 달러(1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그림 1 참고).¹⁾
- [그림 2]와 같이 13개국이 포함된 아태지역의 소매매출 중 전자상거래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 분야별로 보면, 2008년 글로벌 음악 온라인 수익은 총 소매매출액 가운데 10%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0%까지 증가하였으며, 게임과 도박 분야도 4%에서 26%로 증가함.
- 광고, 출판, 비디오, 소매업 분야도 온라인상 거래가 동일한 패턴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매출액 및 비중(2014~21)



주: * 표시는 전망.
자료: eMarketer.

그림 2. 아태지역 소매매출 중 전자상거래 비중(2014~19)



주: * 표시는 전망, 아태지역(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호주) 13국 기준.
자료: eMarketer.

■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예상한 APEC은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경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음.

- 2000년도 APEC 각료회의(AMM)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2014년도 APEC 정상회의에서 혁신적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적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인터넷 경제’라는 용어가 소개됨.
- 디지털 경제 의제는 APEC 무역·투자 활성화 목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생산성 향상, 혁신 구조개혁 촉진,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강화,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의 원동력으로 기여함.
- 또한 디지털 경제는 APEC의 주요 목적인 시장접근 향상과 APEC Post-2020 비전의 주요 의제인 포용적이고 지속

1) eMarketer(2017), “Worldwide Retail and Ecommerce Sales: eMarketer’s Estimates for 2016-2021.”

가능한 성장 촉진에 중추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한편 개발도상 회원국 중 일부는 인터넷·디지털 경제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노동력 대체 등과 같은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전자화폐 결제시스템 표준화,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 환경, 기술적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²⁾ 이러한 변화가 개발도상 회원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임.
- APEC은 디지털 경제를 통해 역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핵심주제를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으로 설정함.
- 2018년도 APEC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디지털 시대 대비’ 및 ‘포용적 기회 활용’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APEC이 혁신을 주도하는 엔진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함.

■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한 APEC 회원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가 APEC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므로, 한국도 APEC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시장은 과거 상품시장과는 다른 규범을 요구하므로 한국은 선진국들이 설정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수용(Rule-taker)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입장(Rule-setter)이 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함.
 - 현재의 국경간 거래에는 과거 상품 거래 시 적용되던 제도, 환경, 기술적 규범과는 다른 규범이 요구됨.
-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APEC 내 디지털 경제 관련 APEC 정책지원부서(PSTU)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현황과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이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 논의에 참여할 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내용

가.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과제

1) 디지털 경제의 기회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사용 확산, 활발한 모바일 앱 개발 등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함.³⁾

2) 연합뉴스(2018. 2. 1), 「한국, APEC기업인자문회의 디지털분과위 공동의장국 맡아」.

3) APEC PSTU(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 인터넷 사용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재화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주었음.
 - 예를 들면 아마존(Amazon)과 알리바바(Alibaba)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까지 시장범위를 확대함.
- 더불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보다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 및 운영이 가능하므로 사업비용을 절감해줌.
 - 예를 들면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현재 운송업계와 숙소업계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임.
- 디지털 접근성 확대는 출산 후 여성의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여 비용을 줄이고 더 높은 후생수준을 제공함.

-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의 국제적 분업화, 즉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운용이 가능해졌음.
 - 특히 비행기나 자동차와 같이 다양한 부품을 각기 다른 위치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원활한 상품 분업화가 불가능함.
- 또한 전문가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전문가의 재배치 비용 감축에 기여함.
- 보건 및 교육 서비스와 같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범위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확대됨.

2) 디지털 경제의 과제

■ 국가간 디지털 격차의 확대는 국가별 격차를 재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제적인 디지털 격차란 정보통신기술(ICT) 접근 및 이용 역량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함.⁴⁾
-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음.
 - 정보 습득이 용이한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사이의 정보격차는 다시 소득격차로 이어짐.
 - 현재진행형인 디지털 경제 발전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하고 있지만, 국가 간 혹은 개인 간 디지털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디지털 격차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보안사고, AI, 로봇의 인간윤리 침해, 실업 증대 등과 같은 도전과제들이 있음.⁵⁾

- 디지털 혁명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네트워크 보안사고와 같은 문제점이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회원국이 디지털 관련 국내 규정을 제정하였지만, 국가간 상호운용성의 결여로 인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과 보안사고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최근 타결되거나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추진 및 국제적 통일 규정 수립을 위해 디지털 무역 관련 이슈를 다루는 항목을 추가하는 추세임.

4) 디지털 격차 정의 참고 (http://m.kisdi.re.kr/mobile/colm/pro_view.m?seq=534&category=W&selectPage=42, 검색일: 2018. 4. 19).

5) OECD(2017),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 각 회원국은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함.

나. APEC 내 디지털 경제의 등장

■ 여러 기관 및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유사 용어로 ‘인터넷 경제’, ‘정보 경제’, ‘지식기반경제’ 등을 혼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정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OECD(2013)는 디지털 경제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시장으로 구성된 경제’⁶⁾라고 정의함.
- ‘인터넷 경제’의 경우 인터넷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주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로 좁은 의미의 디지털 경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의 의미를 ‘인터넷 경제’로 한정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⁷⁾

■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경제는 APEC과 더불어 다른 주요 협의체와 국제기구도 관심을 갖는 주제이나,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디지털 경제를 상이하게 개념화하고 있음.

- APEC은 인터넷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활용 금융, 네트워킹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IT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지칭하고 있음.
- ‘디지털 무역’이라는 개념도 산업별로 상이하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된 개념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표 1.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적 논의 현황

협의체	논의 현황
G20	- G20은 디지털 경제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 4월 디지털 관련 장관급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함. -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디지털화 로드맵,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한 디지털 능력 배양 등 2개의 부속서를 채택함.
G7	- 2017년도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G7 혁신, 역량, 노동에 관한 사람중심 행동계획’ 아래 ‘G7 ICT 및 산업 관련 다중이해관계자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디지털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함.
OECD	- OECD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를 2014년에 발족하여 그해부터 매년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2016년에는 ‘디지털 경제, 혁신 성장, 사회적 변형’이라는 주제로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로운 정보교류 촉진, 디지털 혁신 및 창의성 증진, 인터넷 연결성과 융합서비스의 이익 향유, 디지털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증진 노력, 디지털 기술 습득지원 등이 담긴 장관선언문을 발표함.
ASEAN	- ASEAN은 2018년 3월 경제장관회담을 통해 금년도 5가지 핵심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첫 번째 목표로 ‘전자상거래 포함 아세안 내 디지털 경제 중점 구축’을 제시하여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ASEAN은 역내 디지털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직면한 디지털 분야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ASEAN 행동 프로그램 2017-2025’를 제시함.

자료: KISDI(2017),⁸⁾ KOTRA(2017)⁹⁾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6) OECD(2013), “The Digital Economy.”

7) 윤창인(2000), 「세계경제의 디지털화 현황 및 전망」, 『나라경제』, 6월호, KDI.

■ APEC은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기술변화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관련 논의에 지난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음.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¹⁰⁾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인터넷 가치사슬’¹¹⁾의 다섯 가지 요소인 ① 콘텐츠 저작권 ② 온라인 서비스 ③ 서비스 실현 기술 ④ 연계성 ⑤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구조 혹은 디지털 생태계(Digital Ecosystem)를 설명함.
-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¹²⁾ 디지털 경제를 5가지 인터넷 가치사슬로 구분했을 때 요소별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온라인 서비스는 46.3%를 차지하고, 그 외 사용자 인터페이스 23.5%, 연계성 16.7%, 서비스 실현 기술 10.8%, 콘텐츠 저작권이 1.8% 순으로 차지함.

표 2. 인터넷 가치사슬(Internet Value Chain)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콘텐츠 저작권 (Content Rights)	콘텐츠 저작권은 전자책(e-book), 음악, 비디오/영화,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을 포함하며,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SNS에 사진 및 동영상상을 업로드하면 콘텐츠 저작권을 소유하게 됨.
온라인 서비스 (Online Service)	-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여행사 웹사이트 등 -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연결을 통한 게임(candy crush), 출판(e-book), 겜블링(Betfair), 비디오(youtube, netflix) 등 - 정보 제공 서비스: 검색엔진(구글, 야후, 사파리) - 소셜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킹(facebook, LinkedIn, WorldPress, Twitter),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케이션(Skype, WeChat, Kakaotalk) - 클라우드 및 그 외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이메일 기능, 사진 및 파일 대량 저장소), 이러닝, 전자중개사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가 있음.
서비스 실현 기술 (enabling technology-services)	- 기술지원: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웹디자인, 앱개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용량 콘텐츠(동영상)를 저장하고 송부하는 기술 서비스 제공 - 광고: 인터넷상의 무료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받기 위한 수단 - 결제 플랫폼: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함(Paypal, Alipay)
연계성 (Connectivity)	핵심 네트워크 운영자(core network operator)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super-exchange에 연결하여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s Interface)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 기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말함.

자료: ‘APEC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무역 활성화’ APEC PSU 발표자료(2018. 2. 20).

■ 2018년 APEC은 전년도 핵심주제와 동일한 ‘포용적 성장’과 함께 ‘디지털 시대 대비’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역내 디지털 경제 분야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

- 2000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8차 APEC 각료회의에서 당시 역내 전자통신 및 IT 분야의 무역 자유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함.

8) 김성용(2017), 「2017년 G20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결과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12호, KISDI.

9) 임소라(2017), 「디지털 무역 이해하기 II: 무역협정을 통해 보는 디지털 무역」, KOTRA. (8월 16일)

10) APEC PSU(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11) AT Kearney(2010), *Internet Value Chain Economics*.

12) APEC PSU(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 2002년 APEC 정상회의의 부속서로 전자통신 및 IT 분야와 관련하여 “무역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정책 이행 성명서(Statement to Implement APEC policies on Trade and Digital Economy)”¹³⁾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 당시 사용된 ‘디지털 경제’의 개념은 전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개념이 확장되어 컴퓨터 하드웨어, 디지털 전자 제품 등에 해당하는 재화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프라, 전자상거래 서비스, 콘텐츠 등을 포함함.
- 2014년 중국에서 개최한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인터넷 경제’라는 용어가 언급되었으며, 이후 APEC 인터넷 경제 촉진 협력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인터넷 및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됨.

3.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체계 및 현황

가.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체계

■ APEC은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 협력 증진, 아시아 태평양 정보 인프라 구축 마련 등을 목적으로 APEC 창립 1년 후인 1990년에 ‘정보통신실무그룹(TE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을 설치함.

- TEL은 인터넷과 ICT 관련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 경제 부분에서 역내 회원국이 함께 포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 2015년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도래와 전자상거래 사용의 증가로 인터넷 경제를 촉진하고 관련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 Ad Hoc Steering Group on the Internet Economy)을 발족함.
- 더불어 APEC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전자상거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E-Commerce Steering Group)’을 설립함.¹⁴⁾
 -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서류 없는 무역,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인터넷 보안(e-security) 등이 있음.

■ APEC은 디지털·인터넷 경제 관련 논의 협의체로 무역투자위원회(CTI)¹⁵⁾ 산하 소위원회인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과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을 두고 있음.

- 2015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인터넷·디지털 경제 증진과 역내 회원국간 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AHSGIE는 2017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연장을 논의하고 있음.
- ECSG는 1998년에 발간한 APEC 전자상거래 청사진 보고서¹⁶⁾에 근거하여 1999년에 CTI 산하에 설치된 그룹으로,

13) 2002 APEC 정상회의의 부속서.

14) 제10차 APEC 각료회의(1998. 11)에서 채택.

15) CTI는 APEC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협의체이며,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함.

APEC 역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이슈와 관련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및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¹⁷⁾’을 수립 및 추진 중임.

- CBPR은 현재 도입 초기 단계로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가입순) 등 6개 회원국이 가입함.
- ECSG(미국 의장)는 AHSGIE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ECSG를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논의를 담당할 새로운 협의체 즉, 디지털경제 운영그룹(DEWG: Digital Economy Working Group)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함.
- 고위급 회의체인 AHSGIE가 포괄적인 인터넷 경제 이슈를 다루어온 반면, CTI 산하 그룹인 ECSG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무역만을 다루어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디지털 경제를 다루기에 부적합하다는 우려를 일부 회원국(중국, 러시아)이 표명함.
- 최근 디지털 경제가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디지털·인터넷 경제 로드맵 이행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의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ECSG와 AHSGIE의 합동회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의 제안에 반대한 회원국은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를 수렴할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AHSGIE의 활동을 연장할 것을 제안함.

나. APEC 내 최근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

■ 제25차 APEC 정상회의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및 ‘APEC 국경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환영하고,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을 포함한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원활화를 위한 조치를 고려할 의사를 표명함.

- 제25차 APEC 정상회의는 역내 경제의 약 9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MSME)이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도전해야 하므로, 이들이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여건 조성을 강조함.¹⁸⁾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노동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새로운 직업 세계에 대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APEC은 베트남에서 제안한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프레임워크(APEC Framework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¹⁹⁾’를 제25차 정상회의의 부속서로 채택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APEC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교육과정, 직무교육, 재취업 교육 등의 강화를 약속함.

1)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는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간 원칙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채택함.

16) 1998 APEC 정상회의 부속서(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17) APEC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상호 이전을 위해 '11년에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이며, 국내 인증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됨(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7. 6. 12).

18) 2017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의 결과(외교부 산업부 공동보도자료, 2017. 11. 11).

19) 2017 APEC 정상회의 부속서 B.

- 미국은 2017년도 SOM2 및 SOM3 회의를 계기로 AHSGIE가 제안한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향후 디지털·인터넷 경제와 관련한 주요 동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수정 가능한 문서(living document)로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APEC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11대 원칙’에 합의하고, 2017년에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와 합동각료회의(AMM)가 승인함.

글상자 1.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11대 원칙²⁰⁾

1. 디지털 인프라 개발(Develop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2. 상호운용가능성 증진(Promotion of interoperability)
3. 전 세계적 광대역 접근 달성(Achievement of universal broadband access)
4.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전체적 정부 정책 프레임워크 채택(Development of holistic government policy frameworks for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5.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접근들의 연계 증대(Promoting coherence and cooperation of regulatory approaches affecting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6. 관련 기술의 혁신 및 채택 증진(Promoting innovation and adoption of enabl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7. ICT의 사용에서 신뢰와 안전 증진(Enhancing trust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
8. 디지털 무역과 기업 활동을 위한 국경간 데이터 흐름의 보장(Facilitat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while respecting applicabl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9.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측정 기준 마련(Improvement of baselin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measurements)
10.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 증진(Enhancing inclusiveness of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11.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의 원활화(Facilitation of E-commerce and Advancing Cooperation on Digital Trade)

자료: apec.org(2017/CSOM/006).

2)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프레임워크(APEC Cross-border E-commerce Facilitation Framework)

- APEC은 2001년에 승인된 APEC 무역 활성화 원칙을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포괄적·체계적 논의를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프레임워크’(베트남 제안)를 제시함.
- 본 프레임워크는 2001년에 채택된 APEC 무역활성화 원칙과 APEC 전자상거래 관련 청사진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도 합동각료회의 부속서²¹⁾로 채택됨.

20) 2017/CSOM/006.

- APEC이 제시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전자상거래 관련 최소한의 규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본 프레임워크는 통일된 전자상거래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예측성, 투명성, 보안성, 공정경쟁, 일관성 등을 고려하였음.
 - APEC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ICT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소비자보호를 포함한 민관협력 강화를 제시함.
- 본 프레임워크는 보고르 목표 달성과 Post-2020 비전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3)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기초요소(Building Blocks to Facilitate Digital Trade)

- 미국은 2017 제3차 고위관리회의(CTI) 기간에 ‘디지털 무역 활성화’ 관련 무역정책대화(TPD)를 개최하였으며,²²⁾ 디지털 무역의 범위, IT 분야와 더불어 광범위한 산업에서 디지털 무역의 기회 요인을 확인함.
 - 미국은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기초요소인 핀테크, 전자상거래, 지적권 등의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미국은 무역정책대화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기초요소(Building Blocks for Facilitating Digital Trade) 초안²³⁾과 2018년도 작업 계획²⁴⁾을 제출하고 2017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승인을 받음.
- 2017년도 APEC 정상회의는 포용적 성장 및 디지털 시대의 혁신 성장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하였으며 2018년도 APEC 주체도 디지털 경제를 통한 포용적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디지털 관련 의제에 회원국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2018년도 APEC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디지털 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여 디지털 혁명에 뒤처진(left behind) 회원국 혹은 다음 세대(next generation)가 없도록 디지털 관련 인적 역량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기술이 고도화되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산업이 새로운 디지털 프론티어(frontier)에서 연결되면 더 나은 직업과 생활 수준의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 이러한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APEC 회원국이 역내 네트워크 접속 및 연결성, 거버넌스 조건, 교육 및 기술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정책대화(High-level Policy Dialogue on Digital Economy)

- 2018년도 APEC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CTI) 기간에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정책대화(High level Policy Dialogue on the Digital Economy)를 개최함.

21) 2017/AMM/JMS/AnxA.

22) 2017/SOM3/CTI/019.

23) 2017/SOM3/CTI/018.

24) 2017/AMM/009app03.

- 이번 정책대화에 국제기구와 디지털 산업 종사기업이 참여하여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방법, 데이터 보안,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APEC 정책지원부서(PSU)가 2017년에 발간한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촉진’ 연구보고서²⁵⁾ 회원국별 국내외 전자상거래 현황과 중소기업의 도전과제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촉진’ 연구보고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도전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연구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소매판매(retail sale) 중 전자상거래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2.8%(대략 3 trillion US dollars)에 이를 전망이다.
 - 또한 전 세계 지역 중 아태 및 북남미 지역의 전자상거래(소매판매) 점유율은 2014년에 75%였고, 오는 2019년에는 85%로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대기업보다 낮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율을 높인다면 중소기업의 국제화 기회가 확대될 것임.
 - 한국은 14.9%의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6% 정도의 중소기업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거래하고 있음.
 - 대만은 대략 130만 개 중소기업 중 3만 6천 개 정도의 기업만 PChome(대만에서 가장 큰 온라인 스토어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음.
- 이 연구보고서²⁶⁾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진입이 어려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e-지불수단, 택배·물류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생태계(ecosystem)를 살펴봄.
 - 인터넷 접근성과 접속속도에 문제가 있을 시 구매전환율(shopping conversion rates)이 낮아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광대역 보급률을 높여야 함.
 - 구매자가 선호하는 전자지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구매자의 구매의지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 국가는 인구 중 대다수가 은행계좌가 없거나 전자지불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어서, 지불시스템을 표준화하거나 혹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 가능한 지불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국경간 로지스틱 절차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중소기업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을 가짐.

■ PSU는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첫째, 전자상거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방법과 혜택을 모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초 역량개발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진입을 도와야 함.
- 둘째, 전자상거래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거래에 접근하지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해야 함.
 - 중소기업이 글로벌 마켓과의 연결 가능성 제고, 가치 창출 및 국경간 이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누리도록 거대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을 지원해야 함.
- 셋째,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국가별 규정(regulation) 및 규칙(rules)이 상이하여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정해야 함.

25) APEC PSU(2017), Promoting E-commerce to Globalize MSMEs(2018/SOM1/DIA/007).

26) APEC PSU(2017), Promoting E-commerce to Globalize MSMEs(2018/SOM1/DIA/007).

■ APEC 정책지원부서(PSU)에서 2017년 발간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APEC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주요 이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APEC 21개 회원국 중 현재까지 13개 회원국만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정의도 국가별로 상이함.²⁷⁾

-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이동하는 데이터양도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통일된 국경간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음.
- APEC 일부 회원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국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음.

5)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CBPR은 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국경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개발한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자율 인증제도임.

- CBPR은 자율 인증제도이지만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참여기업이 개인정보 정책 개발 구현을 위해 CBPR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2011년 APEC이 CBPR 시스템을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6개 회원국의 가입²⁸⁾, 2개(TrustArc(미국, '13), JIPDEC(일본, '16)) CBPR 시스템 인증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인증기관 신청을 준비 중임.²⁹⁾
 - 미국에서는 인증기관인 TrustArc를 통해 Apple, Cisco, IBM 등 22개의 기업이 인증받았으며, 일본에서는 JIPDEC을 통해 1개 기업(Intasect Communications)이 인증을 받음.³⁰⁾

표 3. APEC 개인정보보호 규칙

규칙	요구사항
Preventing Harm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Notice	개인정보 통제기관(controller)은 1) 개인정보수집 사실 2) 수집 목적 3) 정보에 대한 설명(개인/기관 특징) 4) 통제기관의 관행 및 정책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Collection Limitation	개인정보 수집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공정해야 하며, 수집 시점에 명시된 구체적인 목적으로 제한
Uses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따라 사용을 제한
Choice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공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Integrity of Personal Information	기록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최신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도록 보장
Security Safeguards	손실, 무단 접근, 공개 혹은 기타 오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안 통제 시스템 운영
Access and Correction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보장
Accountability	위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보증해야 함.

자료: APEC Document Database (2016/AMM/008app17).

27) APEC PSU(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p. 23.

28) 미국('12), 멕시코('13), 일본('14), 캐나다('15), 한국('17), 싱가포르('18).

29) 방송통신위원회(2017. 6. 12), 「방통위·행자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 보도자료.

30) CBPR 인증기업 명단(2018. 5. 3 기준), <http://www.cbprs.org/>.

4. 결론 및 시사점

- 2017년 APEC 정상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프레임워크’라는 부속서를 채택하고, 디지털 기술 관련 인적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18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디지털 시대 대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가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발표함.
- APEC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경제를 다루기 위해 정기적인 민관대화(Public-Private Dialogue) 및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개최하고, 디지털 기술 관련 역량개발 사업을 추진해 포용적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디지털 경제의 기회 및 리스크, 무역협정 속 데이터 규제 및 규범, 플랫폼 경제, 디지털 산업의 세제 방안, 통일된 법적 프레임워크, 인적자원에 미치는 디지털 경제의 영향 등을 민관·정책대화 및 역량개발 사업의 주제로 논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해야 함.

표 4.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분야

주제	내용
디지털 경제의 혜택 및 리스크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블록체인, 바이오기술, 뇌과학 등과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와 관련한 정책대화 혹은 민관대화를 개최하여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혜택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 파악
무역협정에서의 데이터 규정 및 규칙	데이터 보안 및 안보 규정, 데이터 보안 강화 방안,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규범과 관련하여 대화 혹은 역량개발 사업 추진
플랫폼 경제, 경쟁정책 시스템적 리스크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과 효율성을 창출하지만 지배적인 시장 참여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규제하는 방법 마련
디지털 비즈니스 조세제도	디지털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제조업 위주 조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부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이슈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³¹⁾	데이터 접근 방법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이 각 회원국의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논의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 지오블로킹, 표준 및 상호운용성	독점 기술 표준으로 인한 사물인터넷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위협과 naming과 numbering 시스템의 콘텐츠 차단 방식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와 업무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와 기술 활용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논의

자료: APEC PSU(2017), 『APEC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무역 활성화』, 연구보고서, pp. 54~56.

- APEC은 TEL 및 ECSG와 같은 실무 협의체를 통하여 역내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사이버사고 지원 정책 등과 같은 공공재를 마련해왔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과 이를 통한 각 회원국 경제의 실익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최근 TEL은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11개의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관리·감독을 위한 체계 통합 이슈에 합의하지 못함.

31)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과 관련한 증거 자료 수집 등에 있어 국가간의 사법공조를 규정한 조약(MLAT 정의 참고). https://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9900270.html(검색일: 2018. 4. 18).

- 반면 OECD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2013년에 마련했고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이미 이행한 사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OECD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업 측면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실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관련 어젠다 제안이나 사업 참여가 거의 없어,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발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APEC 내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개도국이 디지털 경제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안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임.³²⁾
 - 디지털 경제 관련 우리나라 제안사업은 최근 5년간 없으며, 디지털 시대의 규칙을 세팅하는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높은 수준의 물리적 인터넷 인프라는 확보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우리 시장으로 접근이 어렵고, 디지털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국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표 5. 디지털 경제 관련 APEC 사업 진행 현황

프로젝트명	해당 실무그룹	제안 년도	제안국가
APEC O2O(Online-to-Offline) 이니셔티브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잠재력 발휘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	2017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디지털 시대 MSME의 금융접근성 향상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	2017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관련 기존·신흥 이슈에 대한 민관대화(PPD)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2017	페루
디지털 인력 개발: 디지털 및 원격학습기술을 활용한 21세기 인력 구축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HRDWG)	2017	미국
디지털 전환: SME와 지역무역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	2017	호주
APEC 혁신 추진: 정신적 건강을 위한 디지털 허브 구축	생명과학혁신포럼(LSIF)	2017	캐나다
디지털 경제 잠재력 발휘를 위한 온라인 연계성 향상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2017	일본
디지털 경제 워크숍·대화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	2017	미국
APEC 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포럼: 전자상거래 활용을 통한 MSME의 글로벌 및 지역시장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	2017	페루
역내 디지털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개선	재무장관프로세스(FMP)	2018	호주
디지털 시대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HRDWG)	2018	대만

자료: apec.org.

32) 2005년 APEC 여성 디지털 경제 참여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APEC 여성 디지털 경제 포럼을 개최했고, 작년에도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음 (<http://www.etnews.com/20171109000386>).

- APEC은 포용적 성장을 새로운 Post-2020 비전으로 거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발도상 회원국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 뒤떨어진 나라가 쉽게 참여해 이 분야의 혜택을 모든 회원국과 개개인에게 나눌 방안을 발굴해야 함.
-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술 도입,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보안 이슈 등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더불어 디지털 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적정지표 개발과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체계 및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및 역량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APEC은 회원국간 무역협상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FTAAP 역량강화사업(CBNI)과 같은 형태의 역량강화 사업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센터의 설립 또는 주기적 워크숍 개최를 고려할 수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성웅. 2017. 「2017년 G20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결과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12호. KISDI.
- _____. 2017. 「디지털경제와 국가전략」 전문가 칼럼. KISDI. (9월 12일)
- 김성웅, 김병우, 박정은. 2017. 「2017 OECD 디지털경제 아웃룩 주요 내용 분석 및 의의」.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19호. KISDI.
- 방송통신위원회. 2017. 「APEC CBPR 개요」보도자료 별첨자료. (6월 12일). <http://www.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boardSeq=44758&mode=view>(검색일: 2018. 4. 16).
- 외교부 산업부 공동보도자료. 2017.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결과」. (11월 11일). http://www.mofa.go.kr/www/brd/m_3903/view.do?seq=3673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bcompany_cd=&bcompany_nm=(검색일: 2018. 4. 18).
- 윤보람. 2018. 「한국, APEC기업인자문회의 디지털분과위 공동의장국 맡아」. 『연합뉴스』. (2월 1일)
- 윤창인. 2000. 「세계경제의 디지털화 현황 및 전망」. 『나라경제』, 6월호. KDI.
- 임소라. 2017. 「디지털 무역 이해하기 II: 무역협정을 통해 보는 디지털 무역」. 통상·규제 뉴스. KOTRA. (8월 16일)

[영문자료]

- APEC, PSU. 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 _____. 2017. Promoting E-commerce to Globalize MSMEs.
- APEC. 2017. Work Plan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Building Blocks to Facilitate Digital Trade for 2018. (2017/AMM/009app03)
- _____. 2017. Building Blocks for Facilitating Digital Trade. (2017/SOM3/CTI/018)
- _____. 2017. Summary of Trade Policy Dialogue: Identifying Building Blocks for Facilitating Digital Trade. (2017/SOM3/CTI/019)
- _____. 2017. APEC Cross-Border E-commerce Facilitation Framework. AMM Annex.
- _____. 2017.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2017/CSOM/006)
- _____. 2017. APEC Framework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AELM Annex.
- _____. 1998. 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AELM Annex.
- AT Kearney. 2010. "Internet Value Chain Economics."

eMarketer. 2017. "Worldwide Retail and Ecommerce Sales: eMarketer's Estimates for 2016-2021."

GMAS. 2016. "The Internet Value Chain: A Study on the economics of the internet."

OECD. 2013. "The Digital Economy."

_____. 2017.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웹사이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https://www.apec.org/>.

외교부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정(CBPR) <http://www.cbprs.org/>.

eMarketer. <https://www.emarketer.com/>.

부록: 인터넷가치사슬 도표화



자료: AT Kearney analysis(2010) 참고 저자 재구성